

수원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194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나194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10214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석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

변론 종결2021. 10. 6.

판결 선고2021. 12. 22.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1021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7. 7.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모두 취소한다.1) 피고는 주식회사 C에2)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00,699,494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사, 원단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2015. 8.경부터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의류 원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7. 11.경까지 C의 회계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C에 대하여 합계 659,917,532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C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8. 2.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채무자 F 및 C, '2017. 5.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2. 접수 제31054호)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C은 2017. 8. 30. 피고에게 '2017. 7.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8. 30. 접수 제35317호)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하고, 그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4. 서울서부지방법원 D, E(중복)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2019. 4. 9.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2019. 5. 9.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699,494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단 101219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C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C의 대표이사 F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C에 3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가 C에 대여한 돈은 실제로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는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14.경 C의 사업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F가 그 무렵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행위는 C이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기 위해 신규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659,917,532원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금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C의 갱생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19.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C의 계좌로 22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와 C 사이에 2017. 5. 22.자로 79,000,000원(2017. 5. 19. 송금된 3,000,000원, 2017. 5. 22. 송금된 76,000,000원), 2017. 5. 29.자로 102,100,000원(2017. 5. 23. 송금된 2,600,000원, 2017. 5. 25. 송금된 45,000,000원, 2017. 5. 26. 송금된 30,000,000원, 2017. 5. 29. 송금된 24,500,000원), 2017. 6. 5.자로 58,900,000원(2017. 6. 1. 송금된 38,900,000원, 2017. 6. 2. 송금된 3,000,000원, 2017. 6. 5. 송금된 17,000,000원), 2017. 6. 19.자로 36,000,000원(2017. 6. 16. 송금된 13,000,000원, 2017. 6. 19. 송금된 23,000,000원), 2017. 7. 21.자로 44,000,000원(2017. 7. 5. 송금된 14,000,000원, 2017. 7. 17. 송금된 1,000,000원, 2017. 7. 21. 송금된 29,000,000원)의 각 금전소비대차증서(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와 갑 제10, 17, 18, 20, 2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C의 갱생을 위한 담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피고가 C에 금원을 송금한 이후에 그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기존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에 해당할 뿐,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기 위한 담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2017. 5. 22.자 설정계약'이고, C이 피고로부터 2017. 5. 19.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320,000,000원을 송금 받았는바, 외형상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가 C에 32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7. 8. 2. 경료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처분행위는 2017. 5. 22.이 아닌 2017. 8. 2.경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C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주장에 따르면 약 10년 전부터 C과 사이에 담보 없이 금전거래를 해왔다는 것인바, 회사 운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초기에 '2017. 5.경부터 C의 현금유동성이 현저히 나빠지게 되었고, 2017. 5. 17.경 C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자금대여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3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5. 22.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C 및 법무사사무소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설정등기가 2개월이 지나서야 경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C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320,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모두 이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2017. 5. 22.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5회 작성되었는데, 각 계약서의 담보제공란에는 모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법인)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대여자 희망시 채무자 비용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C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2017. 5. 22.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단순히 C 및 법무사사무소의 사정으로 그 등기가 지체된 상황이었다면, 담보제공란에 '위 채권은 2017. 5.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17. 7. 21.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도 2017. 5.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1.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로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매매예약 계약서에는 '매도인(C)은 매수인(피고)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할 수도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매예약이 체결된 2017. 7. 31. 무렵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인 2017. 8. 8.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2017. 5.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C의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H는 신용보증기금에 '2016. 1.경부터 C와 수입대행 거래를 해왔는데, 2017. 7.경부터 C의 대금결제가 계속 지연되자 H의 대표이사가 C의 F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한 끝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무렵 다른 채권자에게 등기원인일자를 소급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7. 5.경부터 C의 현금유동성이 현저히 나빠지게 되었고, 2017. 5. 17.경 F로부터 자금대여 요청을 받아 320,000,000원을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7. 5. 8.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사이에 C이 피고의 계좌로 합계 502,238,048원을 이체하고, 피고가 C의 계좌로 이 사건 송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514,100,000원을 이체하여 그 차액은 11,861,952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될 무렵까지 피고가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채권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기간 C과 피고 사이에 오고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이 사업계속을 위한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자로서 200,699,494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200,699,494원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권혁중

판사조희성

판사이재원

별지

1) 소장에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기재와 동일하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이 '2017. 5.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이유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계약은 실제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등기접수일 무렵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소장에는 '원고에게'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청구취지를 주식회사 C에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으로 선행한다.